

日本の 농약개발 및 관리현황과 생산대책 ②

残留・慢性毒性 시험일종해 신규농약검수추세

국립농업자재검사소 생물검사과

농림기좌 권 영 옥

이달의 차례

5. 농약의 등록제도

□ 농약의 생산대책

1. '81 일본의 식물방역사업 개요

- (1) 병충해 예찰사업
- (2) 병해충 방제대책
- (3) 농림수산 항공사업
- (4) 농약안전대책
- (5) 특수병충해대책
- (6) 농약집사소 기능강화

2. 농약의 생산·출하 및 수출입동향

- (1) 농약의 생산 및 출하상황
- (2) 농약의 수출 및 수입상황
 - (가) 수출
 - (나) 수입

3. 무등록 농약 유종의 단속강화

4. 日本國의 농약등록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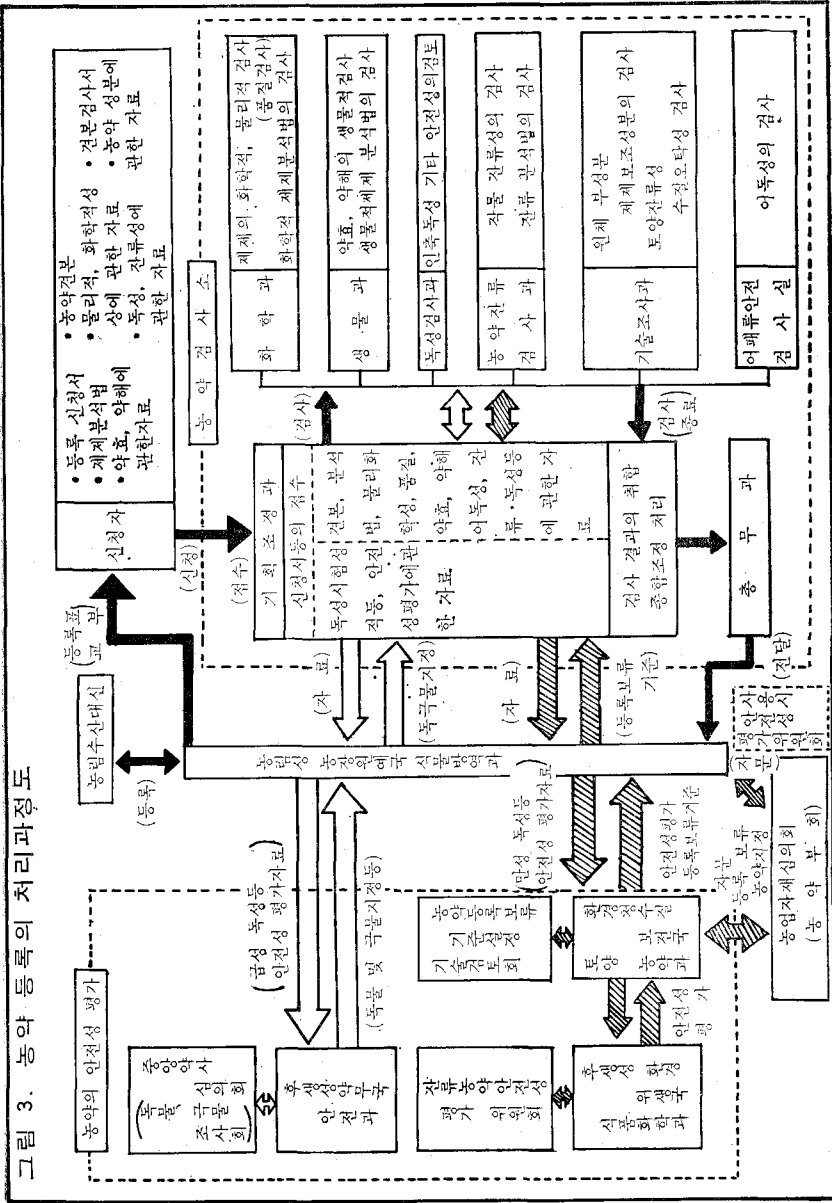
- (1) 농약의 등록상황
- (2) 등록사무의 합리화
- (3) 농약명의 국제화
- (4) 생산실적없는 농약의 처리
- (5) 유효기간경과 농약처리

5. 농약의 등록제도

일본 농약취체법 제1조에 의하면 농약에 대한 등록제도를 설정하고 사용규제 등을 비롯하여 농약 품질의 적정화와 안전사용으로 국민건강을 보호하게 되어 있다. 일본의 농약 행정은 주로 이법에 의해서 행하여지고 있는데 농약의 제조업자, 수입업자는 제조, 가공 또는 수입한 농약에 대하여 농림수산대신의 등록을 받지 않고서는 판매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1) 농약 등록의 처리과정

일본에 있어서의 농약의 등록처



□ 일본의 농약개발 및 관리현황과 생산대책 □

리 과정을 살펴보면 그림 3과 같다.

(2) 등록신청

등록을 신청하는 자(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 농약의 약효, 약해, 독성 및 잔류성에 관한 시험성적서 및 농약전본을 첨부하여 농약검사소를 경유, 농림수산대신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등록번호

(나) 농약종류 및 명칭

(다) 물리화학적 성상

(라) 유효성분의 종류 및 함유량

(마) 기타 성분의 종류 및 함유량

(바) 판매시의 용기 또는 포장의 종류와 재질 및 내용량

(사) 적용 병해충의 범위와 사용 방법

(아) 사용상의 주의 사항

(자) 인축에 유독한 농약에 대하여는 그 상황과 해독방법

(치) 수산 동 식물에 유독한 농약에 대하여는 그 상황

(카) 인화성, 폭발성 또는 피부손상 우려약제에 대하여는 그 상황

(타) 저장상의 주의사항

(파) 제조장 명칭, 소재지와 제조 책임자성명

(하) 제조방법

(3) 농약등록에 필요한 시험성적

(가) 농약성분의 품질에 관한 시험 성적

신규화합물이거나 신혼합제의 경우에는 검사방법의 원리, 분석성적 타분석법과의 비교, 제품 또는 원체의 물리화학적 성상 등을 지정서식에 의거 첨부하고 기타 농약성분에 관한 자료를 제출 하도록 되어 있다

(나) 생물관계 시험성적

약효시험 성적관계는 별표와 같다.

□ 약효시험 성적

구	분	제	출	성	적
○ 신규적용 등록 약제의 경우	○ 해당 유효성분이 특정 병해충 및 작물에 기등록되었더라도 제형이 새로우며 사용방법이 새로운 것.	3개소	2개년	한	이상의 공적 위탁시험 성적
○ 해당유효성분이 특정 병해충 및 작물에 포함 등록되어 있더라도 제형이 새롭고 사용방법이 종래와 같을 것.					

□ 일본의 농약개발 및 관리현황과 생산대책 □

- 기 등록 농약이나 사용약량 및 사용 농도를 변경하는 경우
- 특정 병해충에 대하여 타 작물에서 기히 등록된 것.
- 타 병해충에의 적용확대
- 기 등록약제와 동일 유효성분 동일 제형이나 함유량이 다른 것

1~2개소의 공적 위탁시험 성적

1) 약해시험성적

- 가) 대상 작물에 대한 약해유무
- 나) 약해가 있을 경우 약해발생 조건 시험성적

다) 약해 발현의 한계약량 및 한계조건 시험성적(2배량 및 고온조건조시, 강풍, 유묘기, 발아시, 유약묘의 조건에 약해가 없는 것이 바람직하다)

라) 혼용 근접살포에 의한 약해유무

마) 주변 작물 등의 약해유무(공중살포용 약제 등)

바) 연용, 축적에 의한 약해유무(잔류성이 긴약제, 시설재배사용약제, 과수약제 등)

사) 2차 약해유무

아) 약해기구(機構)의 해명에 관한 시험성적(생장조정제의 생리작용 등)

2) 독성시험성적

가) 급성독성 시험(화합물의 원체, 필요시에는 제제)

- 경구독성 ○ 경피독성 ○ 피하주사 ○ 흡입독성

나) 만성독성 시험

다) 차세대에 미치는 영향 시험

라) 어독성 시험

공시어 잉어에 대한 원체 및 제제의 48시간 후의 TLm치

마) 잔류독성 시험성적

1) 작물잔류; 식용작물(사료작물 포함)에 적용농약

2) 토양잔류; 전 농약

바) 기타성적

1) 차 농약; 잔류 시험

2) 상전 농약; 잔류기간 시험

3) 연초 농약; 격미(喫味) 시험

4) 사료작물용 농약; 가축, 축산가공품에 미치는 영향 시험.

5) 혼중제; 피처리물의 잔류량 시험

기타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에 미치는 영향 시험

(4) 등록의 심사

(가) 농약검사소에서의 심사

접수된 등록신청서류 및 농약기본 계획조정과에서 취합하여 화학과, 생물과, 농약잔류검사과, 기술

조사과 등의 각 과에 보내져 앞의 그림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 검사 항목에 대하여 관련사항을 분담, 검토하는데 현재 검토하고 있는 주요 검사 항목은 다음과 같다.

- 1) 유효성분 및 기타함유량
 - 2) 제제의 물리적 화학적성상
 - 3) 제제 분석법
 - 4) 원채부성분 및 제제보조성분과 유해성
 - 5) 약효
 - 6) 약해(대상작물, 주변작물, 후작물, 혼용 혹은 근접살포의약해, 2차약해)
 - 7) 작물잔류성
 - 8) 토양잔류성
 - 9) 잔류분석법
 - 10) 인축독성(급성독성, 만성독성, 차세대에 미치는 영향, 생체의 기능에 미치는 영향, 생체내 운명, 유전적 안전성)의 자료검토
 - 11) 적정사용기준
 - 12) 동물체내 축적
 - 13) 어독성
 - 14) 유용동물(누에, 꿀벌, 천적, 들새) 등에 대한 영향
- (나) 안전성평가
- 안전성 평가 자료중 급성독성성적 등의 안정성에 관한 자료는 농립수산성, 농잠원예국, 식물방역과를 통하여 후생성 약무국 안전과에 송

부되어 독물 또는 극물에 해당되는 것은 그의 지정을 받는다. 또한 만성독성시험 성적 등의 안전성에 관한 자료는 역시 식물방역과를 통하여 환경청(수질보전국 토양농약과)에 보내져 안전성의 평가를 받게 되는데 이 평가는 환경청으로부터 흔히 후생성 환경위생국 식품화학과에 자료가 송부되어 잔류농약 안전성 평가위원회에서 검토, 심의가 이루어진다. 환경청은 그의 평가를 기준으로 해서 각 작물에 대하여 잔류농약의 등록보류기준치(안)를 산출해서 농협자재심의회 농약부회(독성소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등록보류기준을 설정하고 잔류분석법과 같이 고시 한다. 농약검사소에서는 그의 독물 및 극물의 지정과 안전성평가결과(등록보류 기준)을 받아 안전성에 관한 검토를 거쳐 안전사용기준을 설정한다.

(5) 등록표 교부

농약검사소의 각 담당과에서 심사가 완료된 신청농약은 기획조정과에서 그의 심사 결과를 정리하여 종합조정된 후 농립수산성(농잠원예국 식물방역과)에 전달되어 농립수산대신의 등록을 받고 등록된 농약제제에 대하여는 신청자에게 등록표가 교부된다.

농 약 생 산 대 책

1. '81년 일본 주요방역사업 개요

농산물 수요동향에 적응한 안전공급체제를 정비하는 과제중 식물방역사업의 추진에 대하여는 논의의 이용, 재편대책의 일환으로 첫째 발전화에 따른 대두 등의 병해충 방제기술, 지역특산작물 병해충에 대한 농약등록의 합리화와 둘째, 최근 일련의 기상변동, 겸업화의 심화 및 혼주화(混住化)의 진행에 따라 병해충 다발생 조건하에 자동적으로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체제의 정비와 셋째, 농약의 안전성에 대한 문제로서 금후 농약사용자의 안전에 대하여 중시하고 농약이 국제상품인것을 고려하여 국제적인 조화를 이루어 나갈 필요가 있다. 넷째는 병해충 침입 방지로서 벼 물바구미, 감자 씨스트선충에서 보논바와 같이 일단 침입이 되면 방제에 큰 곤란이 예상되므로 대량 수입되는 농산물에 대한 효율적이고 정확한 검역에 중점을 두고있으며 금년도 주요 사업을 간추려보면 다음과 같다.

(1) 병해충 예찰사업

병해충 방제를 위하여는 적시, 적

절한 발생 예찰정보를 제공하는것이 극히 중요하다. 논의 재편 대책에 따른 원예작물등의 증가, 재배양상의 다양화, 시설재배의 증가에 따라 병해충의 대상도 복잡 다양화되어 가고 있으므로 정보수집 및 제공등이 에 대응할 체제의 필요가 있어 '80년도 부터는 보통작물 및 과수 이외에 채소 병해충 발생예찰사업을 발족시켰다.

예찰기술의 개선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균 검정사업을 실시하는 한편 새로운 채소응애류의 발생예찰기법의 확립을 위한 사업을 가지, 수박, 딸기를 대상으로 각 2개현에서 실시하여 필요하고도 최소한의 방제회수로부터 경제적인 피해수준을 정하기 위한 방제수준의 설정 등 예찰기술의 확립에 노력하고 있다. 이들 사업은 최근 신농약의 개발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내성균의 발생을 방지하고 효과가 높은 농약을 많이 사용하지 않으면 안되는 실정이므로 농약의 안전사용면에서도 더욱 중요하다.

(2) 병해충 방제대책

농업자 특히 겸업농가 등의 방제체제는 주로 개인방제에 의존하고

있어 효과적인 방제의 추진 및 농약의 안전사용면에서 조직적인 방제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특히 논의 이용 재편대책의 진전에 따라 답작지대에서의 타 작물의 도입으로 인해 방제조직이 약화되어가고 있으므로 병해충방제대책 사업을 중심으로 지역 실정에 맞는 방제기술의 도입과 방제조직의 육성 및 재편성이 필요하다.

'76년에 처음으로 발생한 벼 물바구미의 방제는 그로 인한 피해의 경감과 만연방지를 위해 계속적인 대책을 강구하는 한편 최근 문제가 된 감귤 바이러스병, 벼의 호엽고병 등의 바이러스병 대책에 대하여는 일본 식물방역협회에 항혈청 조제 시설을 설치해서 금년도 말에 조제를 개시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기관인 식물방역소에서는 과수 모본의 바이러스병 검정을 위해 항혈청검정 또는 접종검정을 실시하므로 육안검사를 최소한으로 줄이는 등 검사체제를 정비해 나갈 것이다.

(3) 농립수산항공사업

수도가 중심으로 되어있는 항공방제의 효율적인 방제기술을 보급, 정착화하는 한편 지상방제와의 합리적

인 조합으로 정확한 방제를 추진할 것이며 넓은 면적에 일제 살포하는 항공방제에는 타작물에 대한 피해방지 등의 안전대책에도 충분히 유의할 필요가 있어 적절한 제형(劑型)의 선정이나 비산에 의한 피해방지 대책의 강화와 살포지역내의 점검조사 및 홍보활동을 추진한다.

(4) 농약 안전대책

농산물의 안전한 생산확보, 생활환경의 보전 및 사용자의 안전확보 등을 위하여 농약의 안전하고 적절한 사용방법을 계속적으로 강구하고 또한 농약의 안정성 평가에 대하여는 국제적인 등록요건의 평준화의 동향을 충분히 고려하여 정확한 평가 체제를 정비해 나갈 것이다. 이를 위해 농약안전 추적 조사사업, 농약 토양잔류 조사사업 등을 실시 강화하고 신선한 농산물생산을 위해 주산지를 중심으로 농약 안전사용에 관한 조직적인 지도를 추진하는 한편 농약의 안전성 평가 체제의 정비를 위하여 잔류농약 연구소에 각종 독성시험에 대한 새로운 기술의 확립, 농약 안정성평가를 세계적 동향에 맞추어 실시하기 위한 독성시험 시설의 적정관리규모(GLP) 제도의

조사검토계획을 수립한다. 또한 새로운 잔류농약 대책을 확립하고 본 대책을 종합분석하여 농약안전사용 등의 준수, 농약위해방지를 위한 지도를 실시하는 외에 농약의 유통 및 사용의 적정화를 기하기 위한 수단으로 판매업자 및 사용자에 대해서 특히 등록이 없는 농약의 판매, 사용에 대한 적절한 지도제몽을 실시한다.

(5) 특수 병충해대책

남서쪽 여러섬에서 발생되고 있는 감귤광대파리, 메론파리 등의 특수 해충은 지역의 농업생산 또는 미발생지역에의 이동 방지를 위하여 방제가 극히 중요하고 이들 해충을 효율적으로 방제하는 것이 농산물증수에 도 크게 기여하는 지름길이 된다. 그간 이들 해충을 방제하기위한 꾸준한 노력으로 인해 '80년 與論島, 沖永良部島 등 2개섬에서 근절되었음이 확인되어 농산물의 이동규제를 해제한바 있다. 메론파리에 대하여는 鹿兒島, 縣喜界島에 새로이 불임충 방사에 의한 방제를 실시하고 宮古島에 메론파리를 근절하기위하여 '83년까지 불임충 대량 증식시설의 건설을 완료할 계획이다.

(6) 검사소기능 강화

농약 검사업무의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검사체계의 정비강화를 목적으로 특성검사과에 작업안전계를 설치하여 새로운 검사능을 향상시키고 농약의 수산 동물에 대한 특성검사를 충실히하기 위한 수산동물특성검사 대책사업을 계속 실시한다.

2. 농약의생산·출하및수출입동향

(1) 생산·출하상황

1980농약연도('79년 10월~'80년 9월말)중 농약의 생산 및 출하상황은 표 5 및 표 6과 같으며 생산총액은 전년대비 13.3%가 증가한 323,925백만엔으로 일본 농약사업사상 처음으로 3천억엔을 초과하였다.

이와같은 생산 및 출하금액의 증가원인은 수량의 증가(전년대비 5.5%증가), '79년 12월에 있었던 가격인상(7.39%)과 농약의 종류가 고가격 품목으로 전환된데 기인된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동 농약연도의 농약원체의 생산량 및 출하량을 보면 전

년도에 비해 8%가 감소되었는데 그 원인은 종래 국내생산하던 원체의 일부를 수입으로 전환한데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겠다. 주 총체적으로 농약의 전체적 생산총액은 전년도 보다 증가하였으나 원체의 생산량 및 출하량은 다소의 감소추세를 보였다.

표 5. 농약원체의 생산 및 출하 상황

(’80 농약년도, 단위 : t 또는 kl)

종 류		생산수량	출하수량
살	총 계	43,691	43,585
살	균 계	25,860	24,358
계	초 계	24,936	23,633
합 계		94,486	91,576

표 6. 농약 제제의 생산 및 출하 상황(80농약 년도)

(단위 : t 또는 kl, 백만원)

구분 종류	생 산		출 하	
	생산수량	생산금액	출하수량	출하금액
살 총 계	266,236	127,356	252,446	119,554
살 균 계	150,896	87,610	155,571	86,302
살 총 살 균 계	76,395	22,414	74,697	21,573
계 초 계	167,058	91,934	166,613	88,774
기 타	34,337	7,648	34,577	7,672
합 계	694,922	366,962	683,924	323,875

(2) 수출 · 수입상황

’80농약년도의 농약 수출입의 상황은 표 7 및 표 8과 같으며 전년에 비하여 현저하게 신장되었다.

(가) 수 출

농약의 수출은 수출총액 572억엔 (한화 1,658억원)으로 전년대비 154%로 대폭 신장되었으며 그중 중요

한 수출 품목은 살충제인 다이아저논, 칼답, 살균제는 톱신, 후치왕, 그리고 제초제로는 사단 등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수출의 증가는 국내시장의 확대가 대단히 어렵고 농약개발에 소요되는 비용이 30~40억엔에 이르고 있어 외국시장의 개척이 필요불가결한것에 기인된것이며 농약의 수출대상국을 보면 개발도상국은 물론이고 농약공업의 선진국으로 불리는 미국, 서독 등에 대한 수출이 눈에 띄게 증가되고 있다.

(나) 수 입

'80농약년도 농약의 수입총액은 526억엔(한화 1,525억원)으로 전년 대비 159%로 대폭 신장되었으며 '76년부터 '79년까지는 매년 8~9% 정도의 수입신장을 보였으나 '80년도 갑자기 수입이 증가된 원인은 종래 국내생산되어 오던 원체의 일부를 수입으로 바꾼 제조회사가 늘어나고 원체의 원활한 공급과 국내에 있어 생산원가의 변화에 따른것으로 보여

진다.

주요 수입국으로는 미국이 수입총액의 42%, 서독 32.7%, 스위스 12.6%, 기타 작국에서 13.7%로 미국 등 3개국에서 86%를 수입하고 있는 실정이며 특히 최근 서독에서의 수입이 눈에 띄게 증가해가고 있고 수입주요품목중 원체로는 엠피피, 나크, 다이제스톤, 캡탄, 마세트 등이고 제제로서는 푸릭트란, 메타시스톡스, 베노밀, 레그론 등이다.

표 7. '80농약년도 농약수출상황

(단위 : t, kl, 만엔)

구분 종류	원 체		제 제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살충제	9,940.4	2,327,897	3,906.4	413,764.3
살균제	9,712.5	1,531,762	3,488.4	296,086.0
제초제	3,670.8	331,162	8,310.7	811,455.0
기타	66.0	6,238	284.1	10,168.0
합계	23,389.7	4,197,058	15,989.6	1,531,473.3

(註) '81년도 일본 농약생산 대책자료

표 8. '80농약년도 농약수입 상황

(단위 : t, kl, 만엔)

구분 종류	원 체		제 제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살충제	11,497.2	2,079,473.4	2,057.1	610,190.4
살균제	2,991.5	828,326.4	3,172.0	488,045.3
제초제	4,694.1	974,337.0	1,431.2	232,970.5
기타	117.1	47,276.0	56.0	3,154.0
합계	19,299.9	3,929,449.8	6,716.3	1,334,360.2

(註) '81년도 일본 농약생산 대책자료

3. 무등록 농약 유통의 단속강화

금년 2월상순 농림수산성 식물방역과와 농약검사소 합동 단속반에 의하여 구마모도현 등의 농약 판매상에서 무등록 또는 등록취소된 농약인 비산연과 2, 4, 5, -TP 등이 판매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판매업자와 농약사용자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는 한편 무등록 농약을 판매한 업자에 대한 조치로서는 관련법령에 의한 고발과 동시에 해당 농약에 대하여는 처분방법, 장소, 일시 등을 도도부현 담당부서와 협의, 입회하에 회수처분토록하였다. 또한 농가에서 사용하고 남은 약제는 이를 판매한 판매상에게 반환하도록



◇ 지난 6월 24일부터 일본의 농약관계기관을 방문한바 있는 필자의 모습.

조치하였으며 감귤이나 사과 등의 산지를 관할하는 병해충 방제소에 농약사용 지도본부를 설치하고 동본부에 병해충 방제직원과 농업단체의 기술직원등으로 구성된 지도반을 지구별로 두어 연 수회에 걸쳐 병해충 방제계획과 무등록농약을 사용하지 않도록 지도를 강화하고 있다. 감귤이나 사과 등에 대하여는 잔류농약의 분석을 실시하여 비산연 등의 무등록농약사용 유무를 확인하고있다.

4. 日本國의 농약등록현황

(1) 등 록 상 황

1948년 농약등록 업무를 시작한 이래 지금까지 등록된 건수는 무려 14,522건에 달하고 있으나 그중 현재 사용중인 유효등록농약 건수는 4,529건(유효성분으로는 340종)이며 연도별 농약의 등록상황과 저독성화 및 혼합면으로 본 등록상황을 보면 표 9, 10, 11과 같다.

'80농약년도 재등록을 제외하고 신규화합물의 등록을 포함한 적용 병해충 변경등 등록상황을 보면 살충제 93건, 살균제 47건, 살충·살균제 33건, 제초제 5건, 식물생장조정제 4건, 기타 2건 등 합계 184건

□ 일본의 농약개발 및 관리현황과 생산대책 □

표 9. 연도별 농약의 등록상황

구분	농약연도	75	76	77	78	79	80
살충제	총	2,339	2,179	2,172	2,195	2,185	2,273
살균제	균	763	729	742	745	753	842
살충, 살균제	총, 균	437	479	502	540	551	609
제초제	초	455	431	409	412	406	436
살충, 제초제	총, 초	1	1	1	2	1	—
농약비료	비	4	4	4	4	3	3
식물생장조절제	생	65	49	44	47	49	55
살서제	서	106	100	98	97	99	97
기타	타	190	190	198	208	214	214
계		4,260	4,162	4,167	4,250	4,261	4,529

(註) 농약요람(1980)

표 10. 농약의 저독성화와 중독자의 감소

구분	년도별	1960	1965	1970	1975	1978
독물	물	50%	29%	7%	1%	1%
극독물	물	11	39	39	32	31
보통물	물	39	32	54	67	68
살포시의중독		606	125	155	224	136
살포시의사망		31	11	10	6	6

(註) 식물방역의 금후(1980 殘留研, 石倉秀次)

표 11. 농약의 혼합면으로본 등록상황

구분	단제	2종혼합제	3종혼합제	계
구성비(%)	66.6	27.1	6.3	100

에 달하고 있다. 그중 신규등록상황은 표 12와 같으며 최근 일본의 농약등록의 경향은 신규화합물의 등록 이외에 사용상의 결점(비산등)을 보

완하기 위하여 개발된 DL형분제와 보통분제보다 입자가 작은 FD분제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표 12. '80농약년도 신규 및 신제형등의 등록

구분	종수(종)	적요
신규화합물	7	살충제(3); 육기사밀 입제(바이테이트), 에비세트, BT제

신 혼 합 제	11	살균제(3); 빈크로스린제(로니란), 스티렉스, 가비싸이드 성장조정제(1); 프이가른 유제
신 제 형	35	살충제(14), 살균제(7), 살충살균제(11), 제초제(1), 식물 성장조정제(2)
신 제 제 계	9 62	살충제(2), 살균제(3), 살충살균제(4)

(2) 등록사무의 합리화

농약의 등록업무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그간 전자계산기를 이용한 프로그램 개발 등의 연구를 강구하여 관련사 등을 대상으로 연찬회를 개최하는 등 당해 업무의 추진을 유도해 왔으며 금후 기등록 농약에 대하여는 '82년 4월부터 이 방법에 의하여 새 등록표로 교체하는 한편 신규등록농약 등에 대하여도 전자계산기 이용에 의한 「농약등록표 작성 등 실시요령」을 만들어 등록업무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다.

(3) 농약명의 국제화

지금까지 사용해온 농약의 종류명

은 당해 농약개발회사 및 수입업자 등이 농약검사소와 협의후 명명하고 거기에 국제적 명칭이 따로 있는 경우가 있어 혼란을 가져오고 있었다.

그러나 적정한 농약 종류명은 사용자등 관계자에 대하여 농약의 본질을 간결하고 명료하게 나타내는 동시에 농약의 사용 및 취급의 적정화를 기하는 것이 극히 중요한 것이므로 최근 「무역의 기술적 장해에 관한 협정」에 의해 '80년도 부터는 각 분야에서 국제규격을 도입하는 경향이며 또한 학문의 국제적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국제상품으로 되어 있는 농약도 수출입의 원활화를 기하기 위하여 국제적 명칭을 농약의 종류명으로 하는것이 필요하게 되었다.

농약의 국제적명칭에 대하여는 국내표준화기구(약칭 : ISO)의 농약명칭에 관한 전문위원회(ISO/TC 81로 칭함)를 두어 국제규격(ISO명칭)을 심의하며 '80년 6월 17일 ISO가입기관인 일본 공업표준 조사회로부터 정식으로 승인을 얻어 국제규격 도

입을 위한 체제정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4) 생산 실적이 없는 농약의 처리 계획

농약의 유효등록 건수는 '81년 3월 말 현재 4,563건으로 매년 약 1,500건이 재등록되고 있으며 또한 등록신청 기재사항의 변경도 상당한 건수에 달하고 있어 이로 인한 농약 검사소의 업무량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러한 업무를 경감하고 신규등록 및 변경등록에 대한 검사업무를 충실하게 할 수 있도록 등록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계획하고 있다. 그러므로 농약제조회사에게는 현재 생산실적이 없고 장래 전망으로 보아 생산을 재개할 가망이 없다고 생각되는 농약에 대하여는 재등록을 계속하지 않도록 권유하고 있다.

(5) 유효기간경과 농약

원칙적으로 전국 농업협동조합 연합회(全農)가 공급하는 농약중에서 유효기간이 1년이상 경과된 농약 및 정부의 행정조치로 실질적으로 사용금지된 농약 그리고 개봉된 농약에 대하여 '81년 11월 1일부터 12월 8일 사이에 농약의 품명, 수량, 공급가격, 금액, 상표명, 유효기간 등을 명기하여 신청하면 전농은 신청서를 검토한 후에 현련(縣連)에 반송지시를 행하고 농약제조회사는 현품이 도착되면 이를 확인한후 전농에 보고하면 전농은 신청서와 대조한후 처리를 한다.

처리방법은 '81년도 가격으로 분제와 입제는 공급가격의 80%, 유제, 수화제 및 정제는 85%의 공급금액 처리한다. (계속)

